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약칭: 근로자참여법 시행규칙)



[시행 2023. 6. 8.] [고용노동부령 제381호, 2023. 6. 8., 일부개정]

고용노동부 (노사관계법제과) 044-202-7637, 7638

- 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노사협의회의 간사)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7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노사 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한다.
- 제3조(협의회규정의 제출 등) ① 협의회는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(이하 "협의회규정"이라 한다)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정 · 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10. 7. 12., 2023. 6. 8.>
 - 1. 제정하거나 변경된 협의회규정
 - 2. 신・구조문대비표(협의회규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)
 -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협의회규정의 내용이 관계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의회규정 변경·보완 요청 문서로써 해당 협의회에 그 변경이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.<개정 2010. 7. 12.>
- 제4조(회의록의 작성·비치) 협의회는 법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.
- 제5조(사용자의 보고·설명사항) 사용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.
 - 1.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 - 가. 단기 및 중・장기 경영계획
 - 나. 경영실적과 전망
 - 다. 기구 개편
 - 라. 사업확장, 합병, 공장이전 및 휴업 폐업 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사항
 - 2.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 - 가.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
 - 나. 사업부서별 목표와 실적
 - 다. 신제품개발과 기술 기법의 도입
 - 3. 인력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 - 가. 인사방침
 - 나. 증원이나 감원 등 인력수급계획
 - 다. 모집과 훈련
 - 4. 기업의 경제적 · 재정적 상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 - 가. 재무구조에 관한 일반 현황
 - 나. 자산현황과 운용 상황
 - 다. 부채현황과 상환 상황
 - 라. 경영수지 현황

- 5. 그 밖의 다음 각 목의 사항
 - 가. 사용자가 보고하도록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
 - 나.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
- **제6조(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)**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, 사보 게재, 게시,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.
- 제7조(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・비치)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은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9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사항 접수・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.

제8조 삭제 <2019. 12. 23.>

부칙 <제381호,2023. 6. 8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협의회규정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정· 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